

**2024년 환경관리소
분말활성탄
약품구매 설명서**

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이하 "환경관리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분말활성탄 구매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설명서에 정한 사항은 본 물품 구매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설명서는 군포환경관리소의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류 등을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분말활성탄을 구매하는 데 있어 본 설명서가 제시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여 소각장 가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3. 물품구매 개요

가. 품명 및 규격

품 명	품 질 · 규 격		비 고
분말활성탄	성 상	흑색의 분말	
	수분함량(%)	10이하	
	회 분 량(%)	20이하	
	입도(325Mesh체통과율)(%)	90이상	
	충전밀도(g/ml)	0.35이하	
	요오드 흡착력(mg/g)	800이상	
	자체발화온도(℃)	400이상	

※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M) 적용

나. 용 도: 소각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류 흡착 제거

다. 소 요 량: 34,000kg/년(2024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본 소요량은 실제소요 예정수량으로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예정량을 초과하거나 예정량보다 적게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납품기간: 2024년 계약체결일~2024년 12월 31일까지(기본안)

마. 납기연장: 납품기간 및 약품소요량 종료시 본 물품 구매계약자 쌍방 공히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정계약서를 별도작성 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익년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하여 계속 납품한다.

4. 물품납품 및 입찰참가자격

가. 납품장소 및 방법

- 1) 납품장소: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 내 지정장소
 - ① 위 치: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내
 - ② 탱크용량: 3m³
- 2) 납품방법: 400kg~500kg 백을 이용 지정장소에 납품
 - ① 납품시기: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 ② 납 품 량: 1회 약 1.8~2.0톤 정도

나. 납품절차

- 1) 납품준비
 - ①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사전에 납품을 요구하고, 납품요구를 받은 "계약자"는 협의 날짜에 환경관리소 내 지정장소에 납품한다.
 - ② "계약자"는 통보 받은 수량의 물품을 수분 등이 흡수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각 포장단위별로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게 귀 사내 제품창고에 보관한다.
 - ③ "계약자"는 물품의 품질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또는 자체품질 분석한다.
 - ④ 시료를 채취한 물품은 봉인하고, "계약자" 책임하에 보관한다.
- 2) 납 품
 - ① 자체품질 분석 및 공인분석기관의 분석결과 품질·규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납품을 지시한다.
 -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된 시기에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운반용 차량에

상차하여 운반하고 협의 날짜에 공급한다.

③ "발주자"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발주자"가 검수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④ 검수와 관련된 일체 비용(계량, 공인기관분석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한다.

다. 입찰 참가자격

1) 입찰 공고일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10자리(1110152201, 활성탄)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2) 중소기업간의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5. 물품검수

가. 계 량

1) 물량측정은 "발주자" 입회하에 당 환경관리소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량시설의 고장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 계량증명업소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품질분석

1)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의 품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의 국가공인분석기관 시험성적서를 최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 물품 입고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물품의 품질은 국가공인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반기 1회 이상 국가공인분석기관 시험성적서 의뢰)

다. 검 수

검수와 관련된 일체 비용(계량, 공인기관분석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기타사항

1) 활성탄 사용 운영중 관련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발주자"는 별도로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상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다음 6호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에 기술된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2) 품질이 저하된 약품입고로 공정상 및 환경적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계약자"가 배상한다.

6. 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 가. 물품의 품질분석결과 품질규격이 미달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 절차에 따라 재 납품하여야 한다.
- 나.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자"의 소각설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시 "발주자"는 "계약자" 외의 타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 다. 여러 차례 납품 지연이나 품질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구 분	1회	2회	3회
납품지연 시	주의	경고	계약 해지
약품 규격 미달 시	경고	계약 해지	
납품지연으로 소각로 가동정지	계약해지		

- 라. 특히 본 약품은 다이옥신 저감용으로서 규격에 미달된 활성탄의 납품으로 인한 다이옥신 측정·분석결과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계약자"는 재측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 가. 계약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 개정 이력 자료 제출

- 나. 물품의 납품·입고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 다. 물품의 납품·입고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 라. 물품의 납품 및 입고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8. 기타사항

- 가. 대금의 청구는 매월 1일부터 당월 31일까지 공급물량 완료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군포환경관리소에 청구하여야 하며, 월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단, 12월은 그보다 빨리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 나. "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다. 본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일절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이의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라. "계약자" 또는 고용인이 약품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시료채취 입회 행위 등)는 "계약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 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소재지관할 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9. 계약단가의 조정

- 가. 「지방계약법」 제22조 의거하여 "계약자"는 원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계약 단가 인상요청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요청시기의 원자재 가격상승 증빙자료 및 가격인상 증빙자료
 - 2) 경기도 내 공급단가 비교분석 자료
 - 3)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나. "계약자"는 "발주자"의 안정된 시장공급가격 확인 및 계약단가 조정을 위하여 "발주자" 요구 시 시장 공급단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발주자"는 가 항목의 보고서에 따른 시장공급단가 검토 후 계약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